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2021.3.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불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2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하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참고)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교육부장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김신혜

보건사무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
과장

전결 2021.3.29.

조명연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2714 ((2021.3.29.))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어진 / www.moe.go.kr
동)

전화 044-203-6814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